

# 2024년 강소기업성장디자인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

## - 제품디자인 개발 분야 -

대전광역시와 (재)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「기업성장주기별 3-UP지원사업」 중 「강소기업성장 디자인지원사업」 제품디자인 개발 분야의 지원과제 모집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4월 25일

대전광역시장  
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장

### 1 지원개요

- 사업명: 2024년 강소기업성장디자인지원사업
- 사업목적: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디자인 집중지원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대표 강소기업 육성
- 지원분야: 제품디자인 개발
  - 기업 전략상품의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
- 지원규모: 총 5개 과제 내외
- 개발기간: 협약체결 후 5개월 이내
- 지원대상 및 자격(공고일 기준)
  - 참여기업: 대전 소재 중소·벤처기업(IT융합, 정밀의료바이오헬스, 물류·국방 서비스 로봇, 나노반도체 산업 등 제조·서비스 분야)
  - 개발기업: 대전 소재 디자인전문기업(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 기업)

## 2 신청방법 및 세부 지원내용

- **신청방법:** 참여기업/개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1개의 과제로 공동신청
- **신청과제의 선정**

- 참여기업: 3개 지원분야(토탈디자인, 브랜드, 제품디자인) 중 1개 과제 이내 선정
  - ※ 대전테크노파크 주관 '기업성장주기별 3-UP지원사업'과는 중복신청 가능
- 개발기업: 3개 지원분야(토탈디자인, 브랜드, 제품디자인) 중 2개 과제 이내 선정
  - ※ 단, 1개 지원분야에서 중복선정 불가

강소기업성장디자인지원사업 지원분야		
① 토탈디자인 개발 (마감)	② 브랜드 개발 (공고중)	③ 제품디자인 개발 (본 공고)

(유의사항) 2024년 강소기업성장디자인지원사업(토탈디자인)에 선정된 기업은 기 선정 과제 수 확인 후 신청 必

- **세부 지원내용**

- 기업 전략상품의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
- 지식재산권 출원, 디자인법률자문, 개발제품 사용자 수요조사, 성과홍보 등

지원분야	지원범위	지원규모	지원금액
제품디자인 개발	<p><b>제품디자인 개발·리뉴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디자인 기획, 디자인 후보안 도출, 3D렌더링 및 제작사양, 디자인목업(1:1 사이즈) 제작*, 디자인 매뉴얼(CMF, 시방서 등) 등</li><li>* 실제 사이즈로 목업 제작이 불가한 경우, 관련 사유 사업계획서에 기재</li><li>• 디자인 개발 시안 사용자 수요조사, 디자인 개발 최종안에 대한 디자인 출원 1건 이상 등</li></ul>	5과제 내외	과제당 30,600 천원 내외

- ① 참여·개발기업 간 개발범위 협의 및 확정 ※ 개발범위를 고려하여 디자인개발비 산정
- ②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③ 개발범위 외 별도의 개발은 본 사업 협약내용과 관련이 없으며, 참여·개발기업 간 해결사항임

- 지원금액: 총 개발비용의 90% 지원 (참여기업 민간부담금, 개발사업비 총액의 10% 이상 현금 부담)

- 개발사업비는 개발기업(디자인전문기업)에 지급하며, 부가가치세는 개발사업비 총액(지원금+민간부담금)의 10%로 참여기업이 부담
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및 의결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

(단위: 천원)

지원분야	ⓐ지원금(90%)	ⓑ민간부담금(10%)	사업비 총액(ⓐ+ⓑ)
제품디자인 개발	30,600	3,400	34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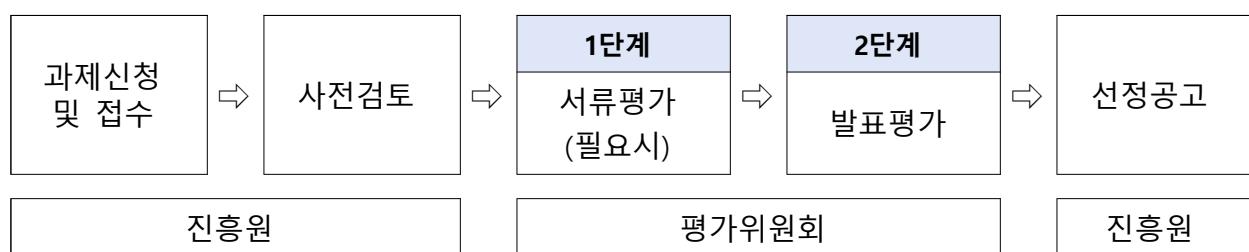
## ○ 사업비 계상

- 사업비 계상시 인건비, 간접비, 창작료 등 아래의 비목별 사업비 상·하한 금액 내에서 계상하며, 신청서식 【별첨】 '사업비 정산기준'에 따라 예산 작성

비목별 사업비 상 · 하한금액				
지원분야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창작료
제품디자인 개발	50%~60%	-	~10%	~10%

##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# ○ 선정절차



① 과제신청 접수 → ② 사전검토: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확인 →

③ 서류 평가(필요시) → ④ 발표평가: 지원대상 과제선정

※ 사업공고 후 접수되는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하여 [1단계 서류평가]를 진행할 수 있음

### ○ 평가내용

- 【서류평가】 디자인개발 필요성, 디자인개발 실행 가능성, 성장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·개발기업 역량 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

- 【발표평가】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참여·개발기업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 / 5월 마지막 주 예정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발표평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br>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발표평가 시 개발기업의 과제책임자가 발표(발표평가 일정 안내 시 발표자료(PPT) 별도 제출)<br>③ 선정기업(지원대상과제) 중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과제 추진이 불가한 경우를 감안하여 차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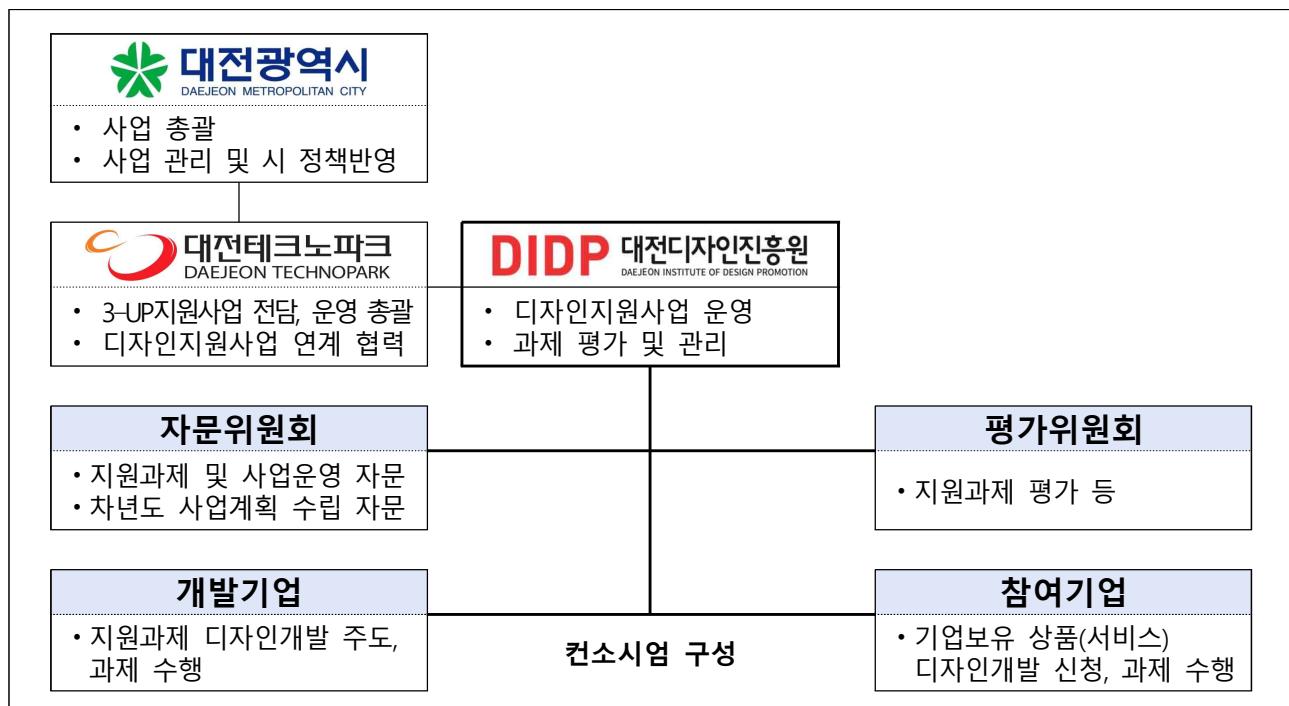
### ○ 평가기준

선정평가기준		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(100)
디자인개발 필요성	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목표의 적정성	20
디자인개발 실행가능성	개발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20
	개발비용의 적정성(디자인개발 사업비 예산계획)	10
	개발기업 수행능력(과제책임자, 기업관리, 지원능력 등)	30
성장가능성	참여기업 성장가능성,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, 상품(고유브랜드) · 사업화 발전가능성 등	20

※ 과제선정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4 추진체계 및 절차

### ○ 추진체계



## ○ 주요 추진절차



※ 사업 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
## 5 접수방법 및 기한

### ○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

- 2024. 4. 25.(목) ~ 5. 14.(화) 18:00까지 / 20일간 ※ 접수마감 시간엄수

### ○ 접수방법 안내

-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접수
- 접수처: msun@didp.or.kr / 대전디자인진흥원 정문선 과장
- 접수확인: 042-930-7842(접수확인 必)

#### ※ 유의사항(중요)

- ① 제출서류 일체 하나로 취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(6. 제출서류 참고)
  - 파일명(사업신청 제출서류 ①~⑦순 취합): 참여기업명(개발기업명)\_제품.pdf
- ② 이메일 제출 후, 담당자 유선 접수확인 필수

## 6

##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별첨 신청서식(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) 참고

**【유의사항】** 참여·개발기업은 사업신청 및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, 반드시 지원자격에 대한 결격여부를 상호 확인하고 사업 신청할 것

구 분	제출서류	제출대상	
		참여기업	개발기업
사업신청 제출서류	① (공통) 사업계획서【서식1】	●	
	② (공통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【서식2】	●	
	③ 과제선정 평가위원 추첨표【서식3】 ※개발기업	-	●
	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2024년 발급분)	●	●
	⑤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(재무제표증명원) / 2022~2023년도 - 2023년 미결산 기업의 경우, 2021~2022년 자료 제출 -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(복식부기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)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- 창업기업의 경우, 해당기간의 자료만 제출	●	●
	⑥ (공통) 차별성검토 검색결과증(기본값 검색)	●	
	⑦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	-	●
선정기업 제출서류 (별도안내)	① (공통) 서약서	●	
	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	●	●
	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●	●
	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각 1부)	●	●
	⑤ 과제 참여인력 증빙서류 -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●	●
	⑥ 제재정보조회 결과 확인서(기본값 검색) - 신청기업, 참여·개발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각 1부	●	●
	⑦ 특히, 제품인증 등 주요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- 사업계획서에 실적을 기재한 기업에 한해 증빙 제출	●	●
	선정평가 이후 선정된 과제의 참여·개발기업은 '선정기업 제출서류' 추가 제출(필수) ※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미제출 시 지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		
제출안내 (중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별성검토 검색방법: 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">www.ntis.go.kr</a>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</li> <li>○ 제재정보조회 확인방법: 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">www.ntis.go.kr</a>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제재정보조회</li> <li>○ 접수 시, 제출서류 순서대로 취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일명(사업신청 제출서류 ①~⑦순 취합): 참여기업명(개발기업명)_제품.pdf</li> <li>- 제출서류는 인감 날인 후 제출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상기 자료 외, 본 사업 관련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</li> <li>○ 발표평가 시, 발표자료 제출(대상기업에 한해 일정 개별 통보)</li> <li>○ 최종선정 후 협약 시, 원본서류 별도 제출 예정</li> </ul>		

### ○ 지원제외대상

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기업, 총괄(과제)책임자
- 공고일 전일 기준,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 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선정기업은 사업종료 시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)
- 동일한 과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자체 및 타 기관 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,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파산 · 회생절차 ·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

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※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## 8 기타사항 및 문의처

### ○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비 계상 시 【별첨】 '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'에 따라 작성
-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 공고 또는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, 대전디자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름

### ○ 유의사항

- 본 공고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, 참여기업의 디자인 가치 제고와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'디자인 프로세스 중심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'임
-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목업 제작, 단순 납품 및 용역 형태의 디자인 개발 등은 인정하지 않음

### ○ 문의처

- 대전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정문선 과장

(연락처) 042-930-7842